

중국 《무역백서(中国的对外贸易)》의 주요내용 및 한국기업의 대응책

송 수 련*

-
- I. 서 론
 - II. 중국무역의 발전사 및 평가
 - III. 중국무역의 현황 및 대응책
 - IV. 중국무역의 주요정책 및 대응책
 - V. 결 론

주제어 : 중국, WTO, 무역사, 무역현황, 무역정책

I. 서 론

중국은 지난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한 이후 10여 년간의 적극적인 개혁
· 개방 노력을 통하여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음은 물론 그 결과 세계경제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다. 이에 중국정부는 WTO 가입 10주년을 맞이한 2011년 12월에 ‘WTO 이행협정’의 이행결과를 공포하고 이후의 무역정책을 천명하고자 국무원의 공보처(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를 통하여 중국의 《무역백서(中国的对外贸易: China's Foreign Trade)》¹⁾를 발표하였다.

본 백서는 중국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포한 최초의 무역관련 발표문으로, WTO 가입 이후 10년 간 중국무역의 발전과정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무역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그간의 선행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대선진국 수출의 잠재교역규모를 규명하거나,²⁾ WTO 이후 실시 중인 변경무역정책에 관한 것이거나,³⁾ 또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제품과의 경합관계에 관한 것⁴⁾뿐으로, 중국무역의 현황과 정책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중국무역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하여 본 백서의 내용을 주제별로 압축하여 소개하고 개별 소주제에 대하여 평가 및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정부 또는 한국기업의 대중통상전략 또는 정책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자평(自評)한 대외무역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무역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백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의 제1장은 중국무역의 역사적 발전(본고의 ‘신중국 수립 이후의 발전사’), 제2장은 중국무역제도의 개혁과 개선(본고의 ‘WTO 가입 이후의 발전사’), 제3장은 중국무역의 세계적 공헌, 제4장은 중국무역의 균형발전 촉진, 제5장은 전방위적 협력관계 구축 및 제6장은 중국무역발전의 지속성

1) 본 자료의 원명을 직역하면 “중국의 대외무역”이나 자료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본 자료의 영문본에서 “white paper”라고 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무역백서”라 칭하고자 한다. 원문은 www.scio.gov.cn 참조.

2) 이종화, “중국의 대선진국 잠재교역규모 추정-WTO 가입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23권 제3호, 2011.9.

3) 최문·윤기관, “WTO체제하에서 중국 변경무역 증가에 따른 국제통상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과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제16권 제1호, 2009.3.

4) 박정동·김경희, “중국의 WTO 가입 후 한국·중국 간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제7권 제1호, 2009.4.

(본고의 ‘중국무역의 주요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주제의 유사성을 시간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본고의 본론을 중국무역의 과거(발전사), 현재(현황) 및 미래(정책)로 재구성하고, 특히 한중무역의 미래를 예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국무역의 미래전략인 본 백서의 제6장 중국무역발전의 지속성(본고의 ‘중국무역의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본 백서는 다양한 산업분야와 광범위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어 그 세부적인 논의를 모두 본고에 담을 수 없는 바, 본 백서의 전문(全文)은 본고 본문 중 각 주제별 전반에서 압축·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대응책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각 주제의 후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중국무역의 발전사 및 평가

1. 신중국 수립 이후의 발전사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1978년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과 이후 30여 년간의 세계적 장기호황을 기반으로, ①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②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③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④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⑤ 국제분업에 동참하고, 그리고 ⑥ 국제경쟁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중국무역은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1) 상품무역의 규모 및 구조

중국의 상품무역은 양적측면에서 이미 세계 1위로 부상하였다. 1978년도 수출입총액은 206억 달러로 세계무역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0년 기준 수출입총액은 3조 달러에 육박하여 1978년 대비 143배나 성장하였다. 이 중 수출액은 1조 5,778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17.2% 성장하였으며 수입액은 1조 3,962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2년 연속 세계 1위의 수출국 및 세계 2위의 수입국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상품무역의 구조 또한 발전한바, 1980년대의 1차 상품(初级产品; primary products) 중심에서 공업제품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1990년대의 방

직산업 중심에서 기계·전자산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21세기에 진입한 이후에는 전자제품과 IT 제품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제품의 수출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가공무역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한바, 현재까지도 중국무역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중 외자기업 및 민영기업의 수출입총액은 이미 국유기업의 그것을 초과하여, 국유기업 중심의 경영방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2) 서비스무역의 경쟁력 강화

WTO 가입 이후 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관광 및 운송 분야의 증가세는 안정적이며, 건설, 통신, 보험, 금융, 컴퓨터, IT, 로열티·특허사용료·컨설팅 등의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2010년의 서비스무역액(정부서비스 제외)은 3,624억 달러로 2001년의 719억 달러 대비 4배 이상 성장하였다. 동기간 세계서비스시장에서 중국의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4%(12위)에서 4.6%(4위)로 성장하였으며, 서비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6%(10위)에서 5.5%(3위)로 확대되었다.

2. WTO 가입 이후의 발전사

2001년 12월 11일에 중국은 16년간의 협상결과로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WTO와의 이행협정에 따라 중국은 공업, 농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의 대외개방을 확대하였고, 무역자유화 및 무역투자편리화의 추진을 가속하였다. 특히 WTO 이행협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무역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유관법률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무역장벽과 행정관여를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의 공개성·공정성·투명성이 더욱 촉진되었다. 즉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제도는 점진적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 유관법률의 법제화

중국정부는 WTO 가입 이후 2,300여개에 달하는 법률, 법규 및 조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WTO 협정 및 중국의 WTO 이행협정과 불일치하는 법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였다. 또한 정비된 법률 및 법규들은 행정상의 허가절

차를 간소화·규범화하고 무역활성화 및 무역구제를 위한 법적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WTO의 ‘지적재산권협정’에 기초하여 중국의 유관 법률과 법규 그리고 사법해석을 개정하였다.

2) 관세인하의 가속화 및 비관세장벽의 축소

WTO 가입당시인 2001년 중국의 수입상품 평균관세율은 15.3%였으나 2005년 1월에는 9.9%까지 인하되어 WTO 이행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를 조기 완료하였다. 한편 2005년 1월부터 424개 상품에 대한 수입쿼터, 수입허가 및 특정입찰 등의 비관세조치 또한 완전히 폐기하였다. 다만 국제협약과 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생명 및 안전의 보장, 환경보호 그리고 수입관리대상품목에 한하여 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도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9.8%까지 인하되었으며, 특히 농산품의 평균관세율은 15.2%까지,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8.9%까지 인하되었다. 즉 WTO 이행협정에 따른 관세인하는 2005년 이후 완전히 달성되었다.

3) 대외무역경영권의 전면 개방

2004년 개정 《대외무역법》은 그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부여하던 대외무역경영권(外贸经营权)을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여, 대외무역경영권의 등록만으로 누구나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그 결과 외자기업과 민영기업의 무역량이 급증하여, 2010년 국유·외자·민영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20.9%, 53.8% 및 25.3%로 확대되었다.

4) 서비스시장의 개방

중국정부는 외국기업들이 금융, 통신, 건설, 유통, 여행 등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였다. WTO는 서비스무역대상을 160개로 분류하는데, 중국은 이 중 100여개 분야를 기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방정도도 선진국의 그것과 유사하다. 2010년 중국서비스업에 신규 투자한 외자기업은 13,905개사에 달하고 투자금액도 487억 달러에 달한다.

3. 평가 및 대응책

1) 한중무역의 역사적 발전

201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바, 수교 당시 ‘선린적 우호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등 양국관계는 순항하여 왔다. 그 결과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한중무역액은 지난 2013년 2,288억 달러로 36배나 확대되었으며, 2003년 이후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대중무역의존도는 2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정부주도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의 공장역할에서 진일보하여 내수시장육성과 고부가가치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단순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은 축소되고 첨단기술제품과 기술이전이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구조가 점차 우량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대중무역구조는 중국이 최종소비지인 일반무역보다 제3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경기침체의 여파로 중국의 대미·대유럽수출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대중수출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구조변화와 한국기업의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이 시급한 바,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Ⅲ장에서 살펴본다.

2) 중국무역제도의 개혁과 개선

(1)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중국정부는 2011년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하여 현재의 수출의존형구조에서 내수주도형구조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한 실무적 정책으로 중국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하여 무역불균형에 따른 무역상대국과의 마찰을 축소하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회피하여, 이에 따른 수출감소와 경기위축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관세인하정책에 관하여는 Ⅲ장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한편 WTO 이행협정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철폐 역시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2003년 이전까지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CCIB’와 ‘CCEE’라는 강제인증제도를 동시에 시행하였는데, 2003년 이후 새로운 제품안전인증제도인 ‘CCC’ 인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중인증제도는 단일화되었고 그 대상도 단순화되었다. 다만 일부 제품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⁵⁾ 실무적으로는 인증획득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단순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⁶⁾

(2) 대외무역경영권의 개방

중국은 계획경제하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제한·독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인 ‘대외무역경영권’을 부여하였으나, WTO 가입을 계기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철폐됨에 따라 등록·등기만으로 누구나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제도적 제한으로 수출입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의 중소형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입거래에 시간적·비용적·절차적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출입거래에 정통한 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대리제도는 중국 특유의 모습으로 발전하여온 바,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한국기업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중국측 당사자의 대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대리관계가 포함된 분쟁발생시 중국의 유관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 결정에 유의하여야 한다.⁸⁾

5) www.keca.or.kr.

6) 논자의 경험상 중형 냉장고의 경우에 ‘CCIB’ 및 ‘CCEE’ 인증취득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증절차 중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 결과 신제품의 출시가 상당시간 지연되는 등 중국의 강제인증제도는 강력한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 ‘CCC’ 인증제도로 전환된 이후 인증획득에 5개월 내외의 시간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의 빈도도 축소되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평가이다.

7) 吴行行, 《论外贸代理制》, 黑龙江对外经贸总第163期, 2008年 第1期, 71页.

8) 자세한 내용은 송수련, “중국위탁매매계약법 및 UN통일매매법의 적용에 관한 CIETAC 중재사

(3) 서비스무역

상무부가 금년 1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서비스무역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5,200억 달러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치이며,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다.⁹⁾

그러나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자원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 업종인 여행·운수 등 전통적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크지 않다. 또한 이들의 수출비중은 중국 서비스수출의 47%에 달하나, 적자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면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그러나 자본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 업종인 금융과 통신 등의 서비스무역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과 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험, 금융, 로열티 및 컨설팅 등 현대적 서비스업종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개방정책의 지연과 현대화 요구를 무시한 결과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¹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 계획’이라 한다)”¹¹⁾을 통하여 서비스업을 경제구조개혁의 축으로 삼고 이에 대한 육성여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服务贸易中长期发展规划纲要)》¹²⁾을 수립하여 운수, 관광, 보험 등 30개 분야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10년 정책로드맵이자 개혁의 청사진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본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가 선정되었다. 3중전회의 결과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던 중국의

레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4권, 2012.6, pp. 171~176 참조.

9) www.jrj.com.cn.

10) 丁婧, “中国服务贸易竞争力分析——基于贸易竞争力指数的评价”, 经济研究导刊, 2012(18), 156~158页.

11) 12번째 5개년 경제발전 계획기간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12) www.mofcom.gov.cn.

금융시장은 ‘시장화’와 ‘민간자본의 참여확대’ 그리고 ‘개방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해외금융기관들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투자 한도확대, 합작금융기관의 설립허용 및 업무범위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금융권의 중국진출 및 성장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지법인 또는 지점의 설치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합작사 설립, M&A 등 다양한 진출 및 성장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차이나 머니’의 한국유입과 영향력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한국시장에서도 중국금융기관과의 제휴·협력 또는 경쟁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¹³⁾

또한 2013년에는 금융, 물류 등과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된바, 해외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산업에서 허용산업으로 완화하고 인가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를 8조 위안 이상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다.¹⁴⁾ 의료서비스는 한국정부 역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방안」¹⁵⁾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분야로 선정하여 의료기관 또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고 나아가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 당시 양국간 의료분야의 협력에도 합의한바, 이러한 양국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급화와 전문화를 통한 차별된 서비스로 중국의 고소득층을 적극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Ⅲ. 중국무역의 현황 및 대응책

1. 중국무역의 세계적 공헌

국제분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뛰어난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공업제품의 주요 생산·수출국이 되었다. 그 결과 국제상품가격을

13) 자세한 조익연·김진, “3중전회 결과를 통해 본 중국 금융시장 변화 전망과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3권 제47호, 2013.11.27, pp. 13~17 참조.

14) www.mofcom.gov.cn.

15) www.mosf.go.kr.

안정시키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킴으로서, 무역상대국 소비자들의 실구매력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한편 중국은 무역상대국에게 방대한 소비시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상품수입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 한국, 호주, 아세안, 브라질 등의 최대수출시장이자 EU의 두 번째 최대수출시장이며 미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세 번째 최대수출시장이다.

나아가 중국은 후진국에 대한 시장개방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후진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2010년 7월 기수교한 36개 후진국에서 생산된 4,700여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정책을 시행한 결과¹⁶⁾ 2010년 후진국 총수출액의 약 1/4을 중국이 수입하였다.

2. 중국무역의 균형발전 촉진

중국은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에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컨대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장기간에 걸쳐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중국의 상품무역 역시 199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대규모 생산설비의 이전으로 공업완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흑자전환되었다. 2005년 중국의 상품무역흑자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4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2,981억 달러로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중국의 상품무역흑자는 각각 1,957억 달러와 1,8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4.7%와 7.2%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흑자는 총무역액의 6.1%와 국내생산총액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역수지폭(흑자 또는 적자)이 큰 9개국과 비교할 경우에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무역흑자는 세계적 분업체계가 확산된 결과 발생한 것이다. 즉 중국이 완제품의 가공·조립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자, 수많은 노동집약형기업들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그 결과 미국 또는 EU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던 무역흑자가 중국으로 이전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 한국, ASEAN 등의 주요 중간재 생산국과의 무역에서 중

16) 이는 전체 세수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은 장기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중국의 상품무역흑자는 대부분 외자기업 및 가공무역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 현재 외자기업의 수출입 및 가공무역의 비중은 상품무역의 50%에 달한다. 2009년과 2010년에 외자기업의 무역흑자는 동기간 상품무역 전체흑자의 64.8%와 68.4%를 차지하였으며, 가공무역의 흑자 역시 동기간 상품무역 흑자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국유기업은 수출입, 일반무역 및 기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흑자폭의 확대는 중국경제에도 독이 되고 있다. 위안화를 이용한 수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거시적인 경제예측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무역흑자에 따른 무역상대국의 위안화 절상압력도 상당하다. 이에 중국정부는 무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흑자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특히 민생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한다.

둘째, 일련의 수입확대정책을 시행한다. 수입관리와 대금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절차를 개선한다.

셋째, 수출환급금제도를 개선한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 환경오염이 심한 제품 그리고 자원의 소비가 큰 제품 등에 대한 수출환급금제도를 폐지하거나 환급정도를 축소한다.

넷째, 가공무역 금지·제한품목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이전을 촉진한다.

다섯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변동폭을 축소하여, 2005년 7월 21일부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2005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위안화의 달러에 대한 명목환율은 30% 가까이 절상되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은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역흑자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무역흑자 및 수출입총액과 국내총생산과의 비율 역시 200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은 중국 스스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3. 전방위적 협력관계 구축

중국은 150개가 넘는 국가 또는 경제협력체들과 무역 또는 경제방면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EU, 일본, 영국, 러시아 등 주요 경제주체들과 대화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APEC, ASEAN+한중일(10+3) 지도자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메콩강 경제협력기구, 중국-아시아 경제협력기구, “투먼 발의(大图们倡议)” 등의 경제협력체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주변국들과 다방면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은 28개국과 1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거나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이 중 5개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총 10개의 경제·무역협력관계를 체결·시행하고 있다. 10개의 경제·무역협력관계를 가진 지역·국가 또는 국가연합은 ASEAN, 파키스탄,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 2010년 이들과의 무역총액은 중국 전체무역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WTO 가입 이후 중국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무역상대국과의 분쟁 또한 증가하였다. 방직물, 제화, 자동차 부품, 철강과 화공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지적재산권의 침해, 공정무역, 식품안전, 환경보호 등의 문제가 다투어졌다. 중국정부는 WTO 협정에 따라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4. 평가 및 대응책

1) 중국무역의 세계적 공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군림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세계적인 장기호황기에도 저렴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됨으로서,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의 걱정 없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세계의 시장이기도 한바, 가공무역을 위한 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수입시장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정부가 단순가공무역을 제한¹⁷⁾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임금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가공무역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¹⁸⁾ 나아가 최근의 중국수입은 중국내 수급이 불가능한 에너지자원과 식량자원 그리고 광물자원을 확보하고¹⁹⁾ 생산 불가능한 부품 및 제품 중심의 첨단기술제품을 수용하여 기술력을 확보²⁰⁾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치고 2013년 세계 1위의 대중수출국이 된 한국의 대중무역구조는 2012년 기준 가공무역의 비중이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다.²¹⁾ 즉 중국의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고 한중간 무역분업구조상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간 무역을 확대하고 나아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의 체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의 대중수출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관세면제와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우대조치를 제한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공무역에 대한 각종 감면·우대정책은 국내법에 해당하는 것인바, 한국정부는 한중 FTA협상과정에서 가공무역중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7) 중국정부는 2005년에 철광석, 선철, 희토류원광, 인광석 등 29개 품목에 대하여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3년간 연평균 1,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이 인건비상승 등 요소비용의 상승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술유입 및 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용·박진희·이상희, “중국 대외교역정책의 전환과 지역별 대외교역 동향”,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3 No.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5.16, p. 4).

18) 관리비·인건비 등 요소비용의 상승으로 운동화, 의류, 컴퓨터부품 등의 제조업체들이 이미 동남아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다(史芳芳, 《中国制造转战东南亚 工人月薪400元土地1美元》, www.caijing.com.cn, 2012.11.2.).

19) 2011년 중국의 10대 수입품목 중 1위와 8위는 원유로 전체 수입액의 13%를 점하고 있으며, 2위와 10위는 철광 및 동 등의 광물자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8%를 차지한다. 또한 7위는 대두로 2%를 차지하여, 이들 제품의 총수입액은 중국 전체 수입액의 1/4에 달한다 (www.kita.net).

20) 2011년 중국의 10대 수입품목 중 3위 디지털 반도체, 4위 액정디바이스, 5위 메모리 및 6위 기타 집적회로 등은 전체 수입액의 13%를 차지한다(www.kita.net).

21) www.kita.net.

나아가 개별기업들은 이후의 대중수출전략을 중국기업과의 단순협력단계에서 벗어나 공동진출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과거에는 중국을 'Made in China(중국 제조)'로 활용하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내수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인 'Made for China(중국 내수시장 공략)'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본과 기술을 갖춘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Made with China(중국과 동반성장)' 전략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중국무역의 균형발전 촉진

선진국들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중국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경우에 수출기업의 채산성악화는 자명하므로, 평가절상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수입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입확대정책을 통한 균형무역을 달성하여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관세인하를 단행한 것에 이어, 2012년 1월 에너지원과 소비재 등 73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하여 관세인하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2012년 2월 20년 만의 최대적자폭인 3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동년 3월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흑자전환 되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2년 4월 《무역수지균형발전을 위한 수입촉진 지도의견(国务院关于加强进口促进对外贸易平衡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잠정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일부 에너지원, 소비재, 신흥전략산업의 핵심부품 등에 대한 관세인하를 공포하여 무역구조개선과 무역불균형완화를 모색하였다.

나아가 중국경제성장의 둔화세가 지속되자 수입확대를 통한 소비진작을 위하여, 2013년 1월 생활·의료용품, 신흥전략산업 관련 설비와 부품, 에너지원, 농산품 등 780여 종류의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전격 단행하였다. 또한 금년 1월에는 신흥전략산업 관련 설비, 부품, 원자재 등 760개 품목의 관세를 최혜국 관세율 이하로 조정하였다.²²⁾ 금년의 관세조정은 3중전회의에서 언급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고도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22) www.mof.gov.cn.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관세인하정책은 중국정부가 매년 행하는 관례적 관세조정정책일 뿐으로, 금년 역시 중대한 정책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품목의 성격상 한국기업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전방위적 협력관계 구축

중국 상무부는 금년 1월 16일 ‘정례기자간담회(商务部召开例行新闻发布会)’²³⁾에서 “2013년 중국은 총 19개 국가(지역)로부터 총 92건의 무역구제와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반덤핑 조사가 71건, 보조금 조사가 14건, 세이프가드가 7건으로, WTO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8년 연속 최대 반덤핑 피소국이고 8년 연속 최대 반보조금 피소국으로 중국은 여전히 보호주의의 가장 큰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정부는 2011년 3월 ‘중국 상공업계의 WTO 가입 10주년 회의(中国工商界纪念加入世界贸易组织十周年会议)’에서 “중국은 이미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목표물이 되었는데, 그 예로 2009년 중국은 세계무역량의 9.6%를 점하였을 뿐임에도 세계 반덤핑사건의 40%와 반보조금사건의 75%에 제소되었다”면서 “WTO의 규칙과 제도를 숙지하여 중국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²⁴⁾고 발표하여, 향후 무역상대국의 제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례기자간담회의 내용에 따르면 “수입제품의 불공정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중국의 무역구제신청은 수입제품 6건을 포함하여 대외반덤핑조사가 11건,²⁵⁾ 수입제품에 대한 보조금조사가 1건”에 그쳐,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흑자에 따른 무역상대국과의 마찰을 확대하지 않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신규규제보다는 마찰의 소지

23) www.mofcom.gov.cn.

24) www.ccpit.org.

25) 수입제품은 제3국으로부터 유입된 순수 수입품을 의미하며, 대외반덤핑조사에는 제3국 이외의 대외지역에 해당되는 홍콩, 마카오, 대만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가 적은 기준규제의 연장으로 무역규제정책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한다. 예컨대 중국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한국제품에 대한 신규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한 것은 1건(테레프탈산) 뿐이나 동기간 일몰재심과 관세부과 기간연장은 각각 4건과 6건에 달한다.²⁶⁾

다만 금년 1월 20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과 미국산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하여 2013년의 예비판정과 동일한 반덤핑관세율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관련한 미국과 EU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포함된 대표적인 합산제조조치²⁷⁾로, 한국기업이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중수출비중이 높고 중국의 '신흥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석유화학제품²⁸⁾은 수입규제 발동가능성이 상존하는 산업으로,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IV. 중국무역의 주요정책 및 대응책

1. 중국무역의 주요정책

중국무역은 여전히 불균형과 비지속성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출성장이 자원, 에너지원, 토지, 노동력 그리고 환경 등 요소의 투입과 소모에 의존한 것에 기인한다. 즉 과학기술과 경영 그리고 창의성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원과 에너지원의 공급 그리고 환경보호문제와 무역확대에 기한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26) www.globalwindow.org.

27) 특정물제품의 수입증가로 자국산업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수입국은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을 합산하여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제소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8) 한국의 대중 석유화학제품수출은 석유화학제품 수출총액의 41.6%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석유화학기업은 설비 및 공급면에서 한국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뤼티에·허진·덩저우,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3권] 중국 주요 산업 (기계, 석유화학, 휴대폰)의 발전방향과 한중 협력 방안”, 산업연구원, 2013.12.27, p. 123).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과 서비스 등은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하고, 지적재산권과 자가브랜드의 수출비중 역시 높지 않다. 무역발전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며, 중서부 지역의 무역규모 및 수준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무역의 질적향상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첫째, 전방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원과 에너지원 등의 요소가격 역시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면서, 중국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질적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11차 5개년 계획(이하 ‘11·5 계획’이라 한다)²⁹⁾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수출입조세정책을 수정하였고, 과학기술을 통한 무역발전에 일조하고자 하였으며, 시장다원화 정책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심화하였다. 또한 가공무역의 구조와 수출입기업의 대출보험서비스를 개선하였고, 기업의 기술발전과 상품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였다.

나아가 ‘12·5 계획’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상표, 품질 및 서비스 역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업구조와 가공무역의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무역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신시장 또한 개척할 것이다. 재정과 조세, 금융과 보험, 외환관리, 통관, 검역, 물류와 운송 등의 분야에서도 정부의 개선된 유관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무역과 투자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것이다. 1994년 중국정부는 《중국의 21세기 의정서: 중국의 21세기 인구, 환경 및 발전 백서(中国21世纪议程—中国21世纪人口、环境与发展白皮书)》³⁰⁾를 제정·발표하여, 에너

29) 11번째 5개년 발전계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0) www.acca21.org.cn.

지절약과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통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일축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4년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에너지 소모가 많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품에 대한 환급조치를 취소하였고, 나아가 수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상품의 가공무역을 제한·금지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입기업들은 ISO14000 등과 같은 환경관련인증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었다.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예컨대 입법, 집행, 홍보는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개선정책을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략적 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³¹⁾을 제정하여, 지적재산권보호를 국가의 중요 정책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은 6년 연속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침(中国保护知识产权行动计划)》³²⁾을 공포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입법, 집행, 교육과 홍보 그리고 대외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1,000여 가지가 넘는 세부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넷째, 수출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중국산 제품의 품질은 꾸준히 개선되어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인정과 선택을 받고 있다. 2010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은 12만 7천 단위로 합격률은 99.53%에 달하고, EU로 수출된 식품은 13만 8천 단위로 합격률은 99.78%에 달하였다. 또한 일본 후생성의 수입식품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일본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하여 20%라는 높은 비율의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합격률은 99.74%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동시기 미국과 EU로부터 수입한 식품의 합격률을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중국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상품의 품질과 안전을 무시하기도 하며, 일부 외국기업들이 중국생산자에게 부적절한 재료의 사용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상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관리·감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1년 3월에는 《무역상품의 품질강화 원년(外贸商品质量提升年)》³³⁾

31) www.sipo.gov.cn.

32) www.sipo.gov.cn.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무역상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허가, 인증 및 감독기구를 마련하여 수출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수출입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보호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새로운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의 시행 이후에, 수출입기업들을 중심으로 “5험1금(五险一金)”³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선진국과의 비교시 중국의 신흥산업은 걸음마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핵심분야의 기술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중국기업이 스스로 과학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 평가 및 대응책

1)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산업구조는 중국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점차 고도화되면서, 한국의 다양한 주력산업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완제품의 경우에 중국기업은 가전, 통신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LNG선, 고급전자제품, 기능강, 디스플레이(LCD), 휴대폰 분야 등 첨단 기술제품 분야에서도 조만간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³⁵⁾ 특히 대중수출을 주도하였던 대표적 기술집약적산업인 통신기기와 반도체 등의 대중수출은 이미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³⁶⁾

33) www.mofcom.gov.cn.

34) 실버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및 주택기금.

35) 자세한 이문형,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1(총괄보고서), 산업연구원, 2011. 10, pp. 135~138 참조.

36) 2011년에는 반도체(-2.6%)와 무선통신기기(-5.4%)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디스플레이도 총수출(14.9%) 대비 낮은 성장(8.2%)을 하였다. 2012년에는 자동차(-34.6%)와 선

또한 한국의 대중수출을 견인하여온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부품 및 소재의 대중수출 역시 중국의 급속한 산업고도화 추세로 조만간 경쟁구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대중 부품 및 소재 수출은 2001년 36.1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중 전체 수출의 19.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571억 달러로 확대되어 대중 수출의 42.5%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품 및 소재의 대중수출집중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는 한국의 대중무역구조가 부품 및 소재를 이용한 가공무역 중심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³⁷⁾

문제는 중국 역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대한 수출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의 부품산업육성정책의 직접적 수혜산업인 전기전자 및 기계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바, 향후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도 한중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구도하에서 중국정부는 시장을 선점·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09년 9월 원자바오 전중국총리는 경기부양과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집중육성할 7대 신흥산업을 선정하여 ‘7대 신흥산업의 역할론’을 강조하였다. 이의 실행을 위하여 2010년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³⁸⁾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의 장기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나아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7월 20일 《12·5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계획(十二五國家戰略性新興產業發展規劃)》³⁹⁾을 공포하였다.

본 발전계획은 7대 신흥산업과 23개의 세부분야 및 20대 주요산업의 혁신 발전공정과 시범공정에 관한 발전방향과 주요임무에 관한 것으로, 특히 7대 신흥산업의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산업고도화를 실현한다

박(-28.1%), 철강(-16%) 및 일반기계(-12.5%) 등의 수출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지식경제부, “2012년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수출입 전망”, www.mke.go.kr, 2013.1.1).

37) 박번순,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SERI 경제 포커스, 제392호, 삼성경제연구소, 2012.9.4. p. 8.

38) www.gov.cn.

39) www.gov.cn.

는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7대 신흥산업에 대한 정부투자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용증대와 경기 부양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11년 전체 GDP의 4%에 불과한 현재의 7대 신흥산업의 비중을 2015년에는 8%까지, 그리고 2020년에는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 1〉 중국의 7대 신흥산업 및 23개 세부분야

7대 신흥산업	23개 세부분야
에너지절감·환경보호	고효능에너지절감, 선진환경보호, 자원순환이용
차세대정보통신기술	정보네트워크, 전자핵심기초, 분석 소프트웨어와 신흥정보서비스
바이오	바이오의약, 바이오의학공정,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첨단장비제조	항공장비, 위성, 궤도교통장비, 해양공정장비, 스마트제조장비
신에너지	원자력발전기술,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신소재	신형기능성소재, 선진구조소재, 고성능복합소재
신에너지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한편 한국정부 역시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술확보와 기술간 융합 및 산업간 동반발전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별하였으며, 지난 2009년 1월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⁴⁰⁾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 양국의 신성장동력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하여 양국간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40)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www.msip.go.kr, 2009.1.13.

〈표 2〉 한국과 중국의 중복되는 신성장동력

분류	신성장 동력 산업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그러나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시 작성된 미래신산업분야의 협력에 관한 합의는, 신흥산업과 관련하여 한중간 경쟁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3〉 협력을 위한 신산업분야

	세 부 내 용
정보통신	- 사이버안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국가정보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논의 - 5G 이동통신 표준 및 신서비스 발굴 등에서의 협력
과학기술	- 대기과학, 해양, 생명과학, 신소재, 정보통신 등에서의 전략적 공동연구 강화 - 중대한 기초과학분야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촉진
신기술 사업화	-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의 기술협력, 공동 R&D 확대 - 기업협력혁신센터의 공동 설립
에너지 절약	- 한·중 에너지 절약분야 협조 메커니즘 구축 - 에너지절약 및 효율에 관한 구체적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고령화 및 의학	- 고령친화산업 및 항노화에 대한 공동연구 - 의약품·의료기기분야 상호인증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운영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에 관한 호혜적 협력사업 추진

출처: 산업연구원(www.kiet.re.kr)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한중간 중복되는 신성장동력분야 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신흥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협력과 공동 R&D 확대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취약한 산업화기술방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기초기술을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화하여 중국 및 세계시장판매를 하께 추진하는 협력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기업협력혁신센터의 공동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실효성이 강한 합의라고 평가된다.⁴¹⁾

따라서 신흥산업분야와 관련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을 추진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경우에, 금번 합의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십분 활용하여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지적재산권의 보호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외국의 선진지식과 기술역량을 흡수하여야 할 필요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특정산업의 외연적 확대 등을 고려하여 2004년까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였으나,⁴²⁾ 2000년대 중반부터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단행되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입장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WTO의 가입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조약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내부적 배경으로 중국정부는 '11·5 계획'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부국건설'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할 것을 천명하였다. 즉 지적재산권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경우에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외자유치가 용이해지고 그 결과 관련기술이 이전될 것으로 예견한바, 중국정부는 중장기적인 관

41) 조철·이원교, “한·중 정상회담과 산업협력 - I. 한·중 정상회담의 산업협력 부문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 2013.8. pp. 10~11.

42) 자세한 김익수·김병구,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 정부의 보호의지, 성과, 한계점을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25권 3호, 2013.9, pp. 66~68 참조.

점에서 첨단산업의 기술수준을 고도화하고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두지 못하고 있는바,⁴³⁾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국내 피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하고 있는바, 피침해 형태는 현지등록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생산, 모방 등)이 독보적이며(80%) 피침해 발생국은 중국(58.3%)이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다.

〈표 4〉 한국의 지적재산권 피침해 발생국가(2009년)

국가	중국	대만	미국	일본	남미	EU	러시아
백분비	58.3%	5.6%	5.6%	5.6%	5.6%	4.2%	4.2%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10.

그 결과 한국은 물론 미국, EU 등 무역상대국의 강력한 항의가 잇따르게 되자, 중국 국무원은 2008년 6월 《국가지적재산권전략요강(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이하 ‘전략요강’이라 한다)》⁴⁴⁾을 공포하여 “2020년까지 중국을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 및 관리상의 수준 높은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지적재산권의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전략요강에서 확정된 5개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11월 《2013년 국가지적재산권 전략추진계획(2013年國家知識產權戰略推進計劃)(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⁴⁵⁾를 공포하였다. 본 추진계획은 8개의 핵심 의무와 84개의 구체적 실행방안, 그리고 전략적 과업을 전면에 배치하여, 전략

43)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 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집행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성, 지역보호주의 및 부정·부패 등이 지적(2007년도 USTR의 NTE 보고서)되고 있다(조미진·박현정,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3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8.16, p. 10).

44) www.sipo.gov.cn.

45) www.sipo.gov.cn.

요강의 목표달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발전(확보)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국기업에의 기술이전과 기술파급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결과, 중국정부가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적 혁신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2년 중국의 발명특허 등록건수는 21만 7000건, 상표 등록건수는 누계 756만 6000건에 도달함으로써 연속 세계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문학작품 저작권 등록건수는 68만 8000건,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건수는 13만 9000건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즉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러한 양적성장은, 본 추진계획의 키워드가 ‘지적재산권의 창조수준 제고’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늠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첫째, 핵심·원천기술과 그에 기반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3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간한 「2012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⁴⁶⁾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17.4%)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무역 적자규모 또한 다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비율⁴⁷⁾은 0.48로 OECD 평균 0.9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의 확보 등 근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양적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영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기술무역흑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적재산권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13년 4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12년에 중국법원의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현황에 관한 보고서인 「2012년 중국법원의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백서(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⁴⁸⁾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46) www.msip.go.kr.

47) 기술수출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48) 중국인민법원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에 관한 현황을 전국인민대표

선별한 「2012년 중국법원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10대 사건(2012年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十大案件)」을 중국법원망⁴⁹⁾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바, 이는 저작자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도 지속될 전망이다.⁵⁰⁾ 다만 중국법상 판례는 법원(法源)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사법판단의 근거로는 인용될 수 없으나, 최고인민법원의 판례는 그 자체로 큰 가치를 가지므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발생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경우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FTA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이 WTO 등의 가입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호수준이 문제되는 이유는,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행정·형사상의 집행실효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⁵¹⁾ 다만 중국은 한국이 FTA를 기체결했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첫째, 중국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집행은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등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가 요체이므로, 한중FTA 협정문상 중국내 행정기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권리구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외에 성·자치구·직할시 등 지방행정기관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바, 한중FTA 협정문상 이들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권리구제가 반영되어야 한다.

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이래, 매년 1차례 관련보고를 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를 맞이 하였다.

49) www.chinacourt.org.

50) www.ipr.gov.cn.

51) 이는 ① 저작권사용에 대한 상업적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②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경찰의 조사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는 것에 기인한다 (조미진·박현정, 전계 논문, p. 10).

V. 결 론

중국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WTO 가입 이후 10년간의 ‘WTO 이행협정’의 이행결과를 공포하고 이후의 무역정책을 천명하고자 《무역백서》를 발표하였다. 본 백서에 따르면 중국무역은 양적측면에서는 이미 세계 1위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측면에서도 가공무역이 축소되고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서비스시장의 개방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중국의 상품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무역상대국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흑자는 중국경제에도 독이 되고 있는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수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공격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상이한바, 개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정부는 광범위한 관세인하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관세인하정책이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인하의 주된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일부 에너지원 및 신흥전략산업의 핵심부품과 장비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주요 설비와 부품의 수입은 지속될 것이고 정부지원 첨단기술의 도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알려진 바, 기술차별화를 통한 내수시장공략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정책적으로 단순가공무역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임금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가공무역의 한계 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내 가공무역은 한계를 맞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수출과 부품소재수출의 대상을 중국기업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공무역을 포함한 일부 산업들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내륙지역으로의 생산기지이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대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서비스무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수, 관광, 문화, 보험 등 30개 분야

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한국정부 역시 2012년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의료분야는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분야인바 고급화와 전문화를 통한 고소득층을 공략하는 방안이 유효해 보인다.

넷째, 최근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선정·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래신산업분야의 협력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중협력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R&D와 기술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중국기업과의 합자·합작 등 협력구조로의 전환을 시급히 모색하여, 중국내수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의 동반진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부용 · 박진희 · 이상희, “중국 대외교역정책의 전환과 지역별 대외교역 동향”,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Vol.3 No.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5.16.
- 김익수 · 김병구,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 정부의 보호의 지, 성과, 한계점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25권 3호, 2013.9.
- 뤼티에 · 허쥘 · 덩저우,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3권] 중국 주요 산업(기계, 석유화학, 휴대폰)의 발전방향과 한중 협력 방안”, 산업연구원, 2013.12.27.
- 박변순,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와 대응”, SERI 경제 포커스 제392호, 삼성경제연구소, 2012.9.4.
- 박정동 · 김경희, “중국의 WTO 가입 후 한국-중국 간 품목별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제7권 제1호, 2009.4.
- 송수련, “중국위탁매매계약법 및 UN통일매매법의 적용에 관한 CIETAC 중재 사례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54권, 2012.6.
- 이문형,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1(총괄보고서)”, 산업연구원, 2011.10.
- 이종화, “중국의 대선진국 잠재교역규모 추정-WTO 가입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23권 제3호, 2011.9.
- 조미진 · 박현정,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07-37호, 2007.8.16.
- 조익연 · 김진, “3중전회 결과를 통해 본 중국 금융시장 변화 전망과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3권 제47호, 2013.11.27.
- 조 철 · 이원교, “한·중 정상회담과 산업협력 - I. 한·중 정상회담의 산업협력 부문 성과와 과제”, 산업연구원, 2013.8.
- 최 문 · 윤기관, “WTO체제하에서 중국 변경무역 증가에 따른 국제통상분쟁 발생 가능성 분석과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제16권 제1호, 2009.3.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2010, 특허청, 2010.4.

丁婧, 《中国服务贸易竞争力分析—基于贸易竞争力指数的评价》, 经济研究导刊, 2012(18).

史芳芳, 《中国制造转战东南亚 工人月薪400元土地1美元》, www.caijing.com.cn, 2012.11.2.

吴行行, 《论外贸代理制》, 黑龙江对外经贸 总第163期, 2008年 第1期, 2008.

www.acca21.org.cn.

www.ccpit.org.

www.chinacourt.org.

www.globalwindow.org.

www.gov.cn.

www.kiet.re.kr.

www.kita.net.

www.mke.go.kr.

www.mof.gov.cn.

www.mofcom.gov.cn.

www.mosf.go.kr.

www.msip.go.kr.

www.scio.gov.cn.

www.sipo.gov.cn.

ABSTRACT

Major Contents and Proposal for "China's Foreign Trade"

Song, Soo Ryun

During the past decade after enter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hina has quickened its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while its foreign trade has been further invigorated. On the 10th anniversary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the Chinese government issues White Paper to give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China's foreign trade development.

Through this paper,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s I. Historic Progress in China's Foreign Trade II. Reform of and Improvements to China's Foreign Trade System III. The Development of China's Foreign Trade Contributes to the World Economy IV. Promoting Basically Balanced Growth of Foreign Trade V. Constructing All-round Economic and Trade Partnerships with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VI. Realiz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t present, the underlying 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he protracted, arduous and complicated nature of the world economic recovery is manifesting itself, and the global economic structure and trade layout face in-depth readjustment. China will make new adjustments to its foreign trade, in an effort to turn foreign trade from scale expansion to quality and profit improvement, and from mainly relying on its low-cost advantage to enhancing its comprehensive competitive edge, thereby turning China from a big trading country to a strong trading power.

China's foreign trade is still hampered by many uncertainties and is bound to meet new difficulties and challenges.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China will open itself wider to the outside world as a driver for further reform, development and innovation, make full use of its advantages,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ll respects. And at the same time China integrate itself into the world economy on a wider scale and at a higher level. China is willing to work with its trading partners to cope with the various challenges facing the world economy and trade, and promote its foreign trade to realize a more balanced, coordin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are prosperity and mutually beneficial results with its trading partners.

Key Word : China, WTO, Trade History, Current Trade, Trade Policy